시설원예현대화

세부사업명	원예시설현	!대화				세	목	자 치 단 체 자본보조			
내역사업명	시설원예현	[대화				예 (백단	_	14,816			
사업목적	_	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	농산물전문생산단지.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, 관수관비, 환경관리, 기타(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) 자재.설비 등 지원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「자유무역협 경쟁력 향신			농업인등의	지원에	관한 특별법	십」제5조(농어업 등의			
지원자격 및 요건	채소.화훼류	채소.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.농업법인.생산자단체									
지원한도	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,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.확 인을 거쳐 집행 (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)			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20	지방비	30	융자	30	자부딩	발 20			
							(단	위 : 백만원)			
	 구 분	20	17년	2018년		2019년		020년			
A1 = 111	<u>합</u> 계		119,100	101,920)	77,150	4	6,300			
연도별 재정투입	국 고		23,820	20,384		15,430		9,260			
계획	지방비		35,730	30,576		23,145	1	3,890			
	융 자		35,730	30,576		23,145	1	3,890			
	자부담		23,820	20,384		15,430	(9,260			
-1-	-1 -1 -1		=1=1			-1-1		N 71 41			
남	당기관		담당	'과	_	당자	٩	연락처			
농림축	·산식품부		원예경	영과		당 김형식 반 최은철	044-	201-2256			
신청시기	정기(전년5	E 8.30.	실까지), 수	시	사업	시행기관	지	치단체		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	보시스티	템(AGRIX)	사업시행지	침서						

[※]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.

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·화훼류를 재배하며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
 - * 단,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(시·군)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(철거·보관·재설치 계획 등)을 수립하고,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
 - 농업인 : 「농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- 농업법인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(단, 시·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 - 생산자단체: 「농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 -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2.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

- 농산물전문생산단지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
 - *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,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
- 일반원예시설(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)
 - APC·농협·농업법인·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·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
 - *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
- 일반원예시설(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)
 - APC·농협·농업법인·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·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
 - *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

○ 화훼류

-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(농협·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, 유사도매시장 등)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

< 지원제외 대상자 >

- ■「보조금법」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시업관리 기본규정」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
-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,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,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,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·품목조합연합회 등
- 사업신청서·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('21년부터 적용)
 -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-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함)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·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
 -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
 - 순화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- 태풍·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시장·군수 종합검토 필요)
 -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*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(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)
 - * 수국, 프리지아, 알스트로메리아, 칼라, 심비디움, 춘란, 호접란, 선인장(다육식물 포함), 스타티스, 리시안서스, 거베라 등 11개 품목
- 시장·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(중복적용 가능)
 -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(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)
 - 농작물재해보험(원예시설) 가입
 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
 -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,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
 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
 -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
- 시장·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·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% 이하로 지원
 -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('21년부터 적용)

3.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

- (농산물전문생산단지·일반원예시설·화훼류) 온실·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
 - 측고인상: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·설비
 - * 측고인상 후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(적설심·풍속)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
 - 관수관비 : 양액재배시설, 농업용 정수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점적관수, 자동관수, 탄산가스발생기
 - 환경관리 : 자동개폐기, 환풍기, 순환팬, 제습기, 차광·차열시설, 보광시설, 온습 도조절기
 - 기 타: 무인방제기, 전동운반기, 레일카, 파쇄기, 빗물저장시설, 방충망*,
 - *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(단.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)
 -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: 골조(KS 규격제품), 장기성 필름
 - *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,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
 - * 단,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,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 해야하며,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(적설심·풍속)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
 - (화훼류)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·설비
 - 개화조절시설(저온설비 등), 하절기온도하강설비, 온도하강 차광시스템, 연작 장해 경감용 베드시설, 휴작기 종구저장시설, 근권냉난방기, 습식유통설비 등
 - 난류(호접란·심비디움)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·설비 : 이중출입문(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), 재배벤치(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,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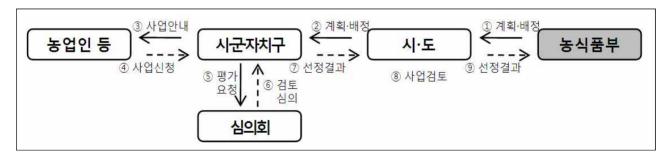
---- <지원제외 대상시설 > ----

-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, 시설·장비 임차료, 전기인입시 기본거리(200m) 초과분
- 단동형·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, 단동형·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- 전기·유류·가스 냉난방기, 농기계(트랙터, SS분무기, 예취기 등), 저온유통 차량, 소모성 자재(배지, 상토)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
- 배지,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
- 예냉·저장·선별시설 등(융자지원 전환)

4. 지원형태
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형태 : 국고(보조 20%, 융자 30%)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-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·도가 30%, 시·군이 70%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
 - *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.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
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**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 - * 시중금리 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- **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
- 사업시행기관 : 시장·군수
 -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
 - * 해당 시·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

사업추진체계



- ※ 사업신청, 대상자선정, 자금신청·배정,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운용 병행
- ※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

1.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

농립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·도별 (가)내시 통보(전년도 9월)

시·도
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(전년도 7월)
- 시·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8월)
- 시·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(전년도 10~12월)

시·군

- 시설원예(채소·화훼류) 농업인·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, 신청방법, 중도포기· 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
-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사업계획서(별지 제2-1호, 제2-2호 서식) 등을 검토 후 시·도에 제출(전년도 8월)
 -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,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,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중복·편중지원 여부,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(「기본규정」제35조)
 - 사업신청서·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('21년부터 적용)
 - *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-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(전년도 9월)
-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(전년도 10~12월)
 - * 사업자 선정기준표(별첨 1-1~4)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

사업대상자

○ 농산물전문생산단지

-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, 한국농어촌공사,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 계획서(별지 제2-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시·군에 제출(전년도 7월~8월)
-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·수정('21년부터 적용)
- *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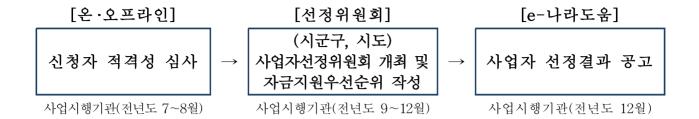
○ 일반원예시설

-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-1, 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출하 약정서와 함께 시·군에 제출(전년도 7월~8월)
-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·수정('21년부터 적용)
- *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
○ 화훼류

-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-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출하약 정서와 함께 시·군에 제출(전년도 7월~8월)
-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·수정('21년부터 적용)
- * 대상정보 : 농업인정보, 농지정보(농지주소, 농지면적), 품목정보(재배품목, 재배면적), 시설정보
-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 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를 첨부
 - *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
- 융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

2. 최종사업자 선정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(전년도 12월)
- 시·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
시·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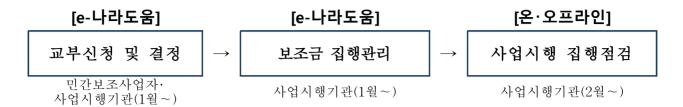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(전년도 12월)
- 시·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
시·군

-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·요건,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,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·도에 보고(전년도 12월)
 -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·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(전년도 9월~12월)
 - * 시·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(Agrix)에 등록·관리(시·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)
- 시·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(전년도 12월 또는 1월)
 - 지원계획, 대출방법,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

3.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

자금배정

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·교부하고(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),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- 시·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(재연장)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

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농식품부 또는 시·도에서 배정·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·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·교부(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)

자금집행

시·도,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,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 - 기계·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,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
- 시장·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(국고·지방비·자부담 등)에 따라 환수 조치
 - *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

- 시장·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(영수증·세금계산서 등)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(준공) 확인서 (별첨 2) 발급
 -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*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 시·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 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*하고 현지 확인·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 시·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 - *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대출 실현 가능성(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, 신용수준, 융자담보확보여부 등)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(원인행위 여부 등) 등
 - **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변경 시 사전 안내)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「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」등에 따라 수행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대상자에게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8조제2항 "농식품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"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* 안내
 - * 자부담을 선집행(100%)해야 하며,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%를 선집행하고, 사업량의 50%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○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

농협은행(농·축협)

-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·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(준공)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
 -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·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

-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
 - * 시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시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

사업대상자

-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, 시·군에 사업비 (국고보조, 융자, 지방비) 배정·교부를 요청하며,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
-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,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·군에 연장신청
 -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, 사업은 완료되었으나, 인·허가 등 행정절차, 담보물권 확보,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(8월말까지)이 필요한 경우, 6월 15일까지 시·군에 재연장 신청
 - *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변경 시 사전 안내)

4. 사업 시행 단계

공통사항
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,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,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
 - 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는 납품하는 기계·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
 -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·군에 제출
 - *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,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, 문구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(예시 : 특허증,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),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
 -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(원본)와 시·군(사본)에 제출

- ③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·군에 제출(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, 지자체 공동구매 (단가계약),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)
 - *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(부가세 포함)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, 시설 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- *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,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
 - *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

설계·시공·감리

- 시장·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
 - 관정은「지하수법」, 전기시설은「전기공사업법」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·시공, 기타 시설·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
 - 시공은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
 - * 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
- 시장·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

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

- 시장·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(원가계산서 등) 확인
- 시장·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·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·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(시공업체 등)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
- 시장·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,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(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)
- 시장·군수(또는 사업대상자)는 주요 기계·장비의 공동구매(단가계약) 장려

-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,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·군수가 공동 입찰·계약 등을 통해 수행
- *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,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
- 업체 선정·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,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
-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(적설심 · 풍속)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
 - *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
 -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(별지 제6-1, 2호 서식)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

사업계획 변경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식품부는 시·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

시·도

- 시·도지사는 시·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.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
- 시·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, 예산 범위를 초과 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·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

시·군

○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·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 적 보고 시 시·도에 보고
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·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·도에 보고
- 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·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·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
 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, 시·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·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 제출
-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

사업 포기

-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·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
 - * 단,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,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

5.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점검시기 : 분기별 1회 이상,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
- 점검내용 및 방법 : 사업계획 이행,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
 - 일정규모(10억원)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(추진상황, 애로사항 수렴 등)

○ 점검결과 조치 :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

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,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본 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
- 시장·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·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·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
 -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

<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>

중요재산	사후관리:	기준 ·기간	처 분제 한기 준					
▪ 설비시설	준공일	10년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					
■ 주요기계·장비	납품일	5년	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금지					

- 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·도지사 승인 후 처리
- 시장·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정산결과를 '별지 제8호 서식'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」등 준용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
-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
-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(별첨 4)
- 시·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·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·도지사에

제재 및 처벌내용

시·도,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사업자 선정*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
 - *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(공문 시행일) 기준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, 무단 용 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(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),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,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, 사후 출하약정(출하권 위임계약)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* 조치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의 해당기간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,
 -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
 - * 사업수행자(업체)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

농협은행(농·축협)

- 대출취급기관이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 급·중도회수 개시일을 시·군 등에 통지
- 대출취급기관은 시·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·도(시·군)에 통보

6.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

- 농식품부(지자체)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
 - 공통사항: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
 -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
-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,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
-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·도(시·군)별 예산 배정 시 반영

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

1.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

- 시·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'20.3월)
- 농식품부는 시·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
 - * 사업추진절차 : 수요조사(~'20.3월) → 예비사업대상자 선정(~'20.9월) →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('20.12월) → 사업추진('21.1월~)

2.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

-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·자치구
- 제출기한 : '20. 7~8월
- 신청자격: '20년도 신청자격 확인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)
 - * '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'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,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추후 통보)

(통합)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

	유 (레마)	형 ☑ 표시)	□ 개인	단체(□ 영능		 사, □ 생산자단쳐	ᆐ, □ 기타)			
	사업신 (개인·법	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		
	대표				생년월일		(남/여)			
일반	재배 (사육	작물 추조)				(m², 마리)				
현황	소 농기				재배규모 (사육두수) 사업 참여 농가 수		<u> </u>			
				ㅎ/t ㅜ						
	일반전	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				
	2	-	유리온실	경질판온실	자동화비닐온실	(e-mail) 일반온실	버섯재배사			
	생산	원예	m²	m²	m²	m²	m²			
	시설	축산	무창돈사	무창계사	무창오리사	무창분만돈사	무창임돈사			
4 4 			마리 양액재배	마리 예냉·저장·선별	마리 관수시설	마리 환경제어	마리 기타			
시설 현황	부대	시설	0, =1, √11 n1	에당시강건글 m²	선무시절 식	 된경제어 식	기나			
0		난방	온풍난방	온수난방	온수보일러	태양열병합	기타			
	난방	유형	m²	m²	m²	m²	m²			
	시설	가온 방식	고체연료	유류·가스	전기	지열·지중열	기타			
		87	m² 사업명	m² 세부사업	m² 신청	m² 시선	m² 신청면적			
			시설원예	□ 전문생산단지	16	기리	2027			
	사업종류		현대화	□ 일반원예시설						
			ICT 융복합 확산	□ 스마트팜시설			m²			
신청	(해당사업	업 ☑ 표시) □ 신재생에니			□ 지열, □ 지열□ 폐열, □ 목자	지열, □ 지열(성능개선) 폐열, □ 목재펠릿난방기				
내용			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	□ 에너지절감	□ 다겹보온커튼 □ 순환식수막시 □ 기타(□ 보온덮개 설, □ 공기열, 	m²			
	사업0	ᅨ정지			1	(반드시	상세주소 기재)			
	재원		계	국고	지방비	융자(신청액)	자부담			
	(백민	난원)								
V A	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						
						20 년	월 일			
						_				
			신청자		(서명 또는	- 인)				
\cap	O 시:	장·군수	· 구청장 귀하							
				, 참여농가 현황	 1부					

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

- ※ 작성대상: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일반원예시설(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), 화훼류
- 1. 일반현황
 - 가. 단지(단체) 개요
 - ∘ 기본현황

사업종류	□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□]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□ 일반원예시설(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), □ 화훼류 (해당사업 ☑ 표시)								
단지(단체)명				대표자명						
소재지										
일반전화		후대전화			모사전성	⊱(FAX)				
회원농가 수			호	재배품목						
단지규모	m²	시설	설재배규모		m²	수출참	여규모		m²	
기 지원액	사업명(지원연도)	합계	국고보조		융자 지방법		4	자부담		
(백만원)	시설원예현대화(2016)	1,000	200		300	300)	200		

∘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**<농산물전문생산단지>**

2016년	2017년	2018년		
점	점	점		

· 기타 <농산물전문생산단지>

수출 업체명	담당자:	연락처:
기술지도기관	담당자:	연락처:
단지관리기관	담당자:	연락처:

나. 시설현황

◦ 생산시설

시설종류별 규모										
유리(경질판) 온실	자동화비닐 온실	일반비닐 온실	비가림시설	육묘·육종장	기타					
m² m² m²		m²	m²	m²	m					
	온실	온실 온실	유리(경질판) 자동화비닐 일반비닐 온실 온실 온실	유리(경질판) 자동화비닐 일반비닐 비가림시설 온실 온실 비가림시설	유리(경질판) 자동화비닐 일반비닐 비가림시설 육묘·육종장 온실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·육종장					

•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

부	대시설·	장비	규모	시설비	보관(처리) 주소 및 소유자		운용방법
명경	id S	설치연도	(수량)	시걸미	능력		[조용임립
			m²/대	백만원	톤		
							* 공동·개별· 자체·임대 등

* 부대시설·장비명(자체보유): 선별장, 예냉시설, 저온창고, 선별기, 운송차량 등

다.	재배	혀화	(품종별)

* '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품종명		()	(,)	()	()	기타	계
	2017(A)									
재배 면적	2018									
(ha)	2019(B)									
	비율(B/A)									100
	2017(A)									
생산량	2018									
(톤)	2019(B)									
	비율(B/A)									100

* 품종명 괄호() 안에 국산, 수입산 구분 기재

마.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

교육기관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교육시간

*수료증 사본 별첨

바.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

사업명(지원연도)	사업대상지 주소	면적(m²)	총사업비 (천원)	국고보조 (천원)	융자 (천원)	지방비 (천원)	자부담 (천원)

2. 사업계획

가. 사업목표 :

나. 세부 사업내역

구분	세부내역	규모·수량 (m², 대, 개소)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 간)	참여농가 (호)
겨					

- * 소요액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는 상세히 첨부
- * 단위는 m²(개소, 대) 등으로 병행표기

다. 자금 세부 조달계획

합계	정부보조	융 자	지방비		자부담	
[집게	97XX	ਲ ^ਾ	시앙미	소계	자기자금	외부차입
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

∘ 자부담 확보계획(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)

_

∘ 국고융자 확보계획(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·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)

_

◦ 담보물 현황

			추정	가격		비고
종류	소유자	면적	공시지가 (감정가)	실거래가	소재지	(선순위 설정액)
		m²	백만원	백만원	(상세주소 기재)	

마. 생산 및 수출계획

◦ 생산계획

구분	연도		출하실	!적(톤)		농식품 인증(%)	표준규격 출하(%)
⊤正		계	공동출하	개별출하	수출	인증(%)	출하(%)
	2017						
생산실적	2018						
및 계획	2019						
	2020 계획						

• 수출계획

구분	연도	품목 (품종)	수출국 (업체명)	재배면적 (m²)	물량 (톤)	금액 (백만원/천\$)
	2017					
수출실적	2018					
및 계획	2019					
	2020 계획					
수출비율(%)	_	_	-	_	%	%
수출신장(%)	_	_	_	_	%	%

* 수출비율 :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(원화금액 기준)

* 수출신장 :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(원화금액기준)

바. 수출 및 선별방법

구분	수 출	· 자	수출	방법	선별	방법	재배방법		
下正	자체	위탁	개별농가	단지공동	개별농가	단지공동	비계약	계약	
	%	%	%	%	%	%	%	%	
2017									
2018									
2019									
2020 계획									

사.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(안전성, 수출 등)

교육기관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교육시간

3.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가.	사업	추진	필요성

- 나. 기대효과
- 1)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
- 2) 수출 확대
- o
- 0
- 3) 품질 및 안전성 향상
- 0
- 0
- 4)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
- 0
- 0
- 5) 기타
- 0

4.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

- 가.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
 - 전체 농가 수: 호
 - 참여 농가 수: 호
 -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:
- 나. 사업추진위원회 구성
 - ∘ 위원장(성명):
 - 연락처:

· 구성원 수: - 구성원:					
- 구성권.					
5.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	l책 및 지원 방안				
가. 시·도, 시·군의 중장기 단지	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				
∘ 중기대책(향후 5년) 및 지원	일 사항				
∘ 장기대책(향후 10년) 및 지	원 사항				
나.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	지원 및 활동계획				
0					
o					
6.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					
0					
0					
7. 종합의견					
가. 시·도 종합검토 의견					
0					
나. 시·군·구 종합검토 의견					
0					
위와 같이	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	ı			
		20	년	월	일
	사업신청자		(서명	또는	인)
	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			또는	
	○○도지사·광역시장		(서명	또는	인)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					

[별지 제2-2호 서식]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

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

※ 작성대상: 일반원예시설(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)

1. 일반현황

가. 경영체 기본현황

법인명/		법인				설립일	일/생년	년월일				
농업인 성명		대표명				성		별				
	주민등록지	() 기	재	생	략						
	(신고거소지)	마을 이름:										
주소		(-)	(시 • 도))	(시	• 군 •	구)	(읍	• 면 • 딍	등)		
	실제 거주지		(리 • 통)	(번	지)						
		마을 이름:										
전화번호				휴	대	전 화	-					
팩스번호				전	자	우 편						

나. 시설현황

◦ 생산시설

시서그ㅁ	시설종류별 규모										
시설규모 (합계)	유리(경질판) 온실	자동화비닐 온실	일반비닐 온실	비가림 시설	육묘·육종장	기타					
m²	m²	m²	m²	m²	m²		m²				

◦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

부대시설·	·장비	규모	시설비	보관(처리)	주소 및 소유자	운용방법
명칭	설치연도	(수량)	시골미	능력		도승의답
		m²/대	백만원	톤		
						* 공동·개별· 자체·임대 등

* 부대시설·장비명(자체보유): 선별장, 예냉시설, 저온창고, 선별기, 운송차량 등

다. 재배현황(품종별)

* '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품종명		()	()	())	()	기타	계
	2017(A)									
재배 면적	2018									
[연석 (ha)	2019(B)									
	비율(B/A)									100
	2017(A)									
생산량	2018									
(톤)	2019(B)									
	비율(B/A)									100

* 품종명 괄호() 안에 국산, 수입산 구분 기재

마.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

교육기관	교육과정명	교육기간	교육시간

*수료증 사본 별첨

바.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

사업명(지원연도)	사업대상지 주소	면적(m²)	총사업비 (천원)	국고보조 (천원)	융자 (천원)	지방비 (천원)	자부담 (천원)

2. 사업계획

가. 사업목표 :

나. 세부 사업내역

구분	세부내역	규모·수량 (m², 대, 개소)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 간)	참여농가 (호)
겨					

- * 소요액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는 상세히 첨부
- * 단위는 m²(개소, 대) 등으로 병행표기

다. 자금 조달계획

합계	정부보조	융 자	지방비	자부담				
립계	3711	융 자	시당미	소계	자기자금	외부차입		
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	

- *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,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
 - 자부담 확보계획(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)

∘ 국고융자 확보계획(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·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)

_

◦ 담보물 현황

			추정	가격		비고
종류	소유자	소유자 면적		실거래가	소재지	(선순위 설정액)
		m²	백만원	백만원	(상세주소 기재)	

마. 생산 및 수출계획

◦ 생산계획

* '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연도		출하실	농식품	표준규격 출하(%)		
TE	연도	계	공동출하	개별출하	수출	농식품 인증(%)	출하(%)
	2017						
생산실적	2018						
및 계획	2019						
	2020 계획						

• 수출계획

* '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연도	품목 (품종)	수출국 (업체명)	재배면적 (m²)	물량 (톤)	금액 (백만원/천\$)
	2017					
수출실적	2018					
및 계획	2019					
	2020 계획					
수출비율(%)	_	_	_	_	%	%
수출신장(%)	_	_	_	_	%	%

* 수출비율 :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(원화금액 기준)

* 수출신장 :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(원화금액기준)

3. 판매 계획

*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

가. 최근 2년간 판매실적

0

나. 판매 경로 및 방법

0

다.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

0

4. 중장기 계획

가. 추진목표 및 전략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세부					
내용					

나. 경영수지전망

					(단위 : 천원)
구분			목표 및 전망		
下世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매출액(조수입)					
경영비					

5.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

가. 문제점

0

0

나. 애로(건의)사항

0

6. 종합의견

가. 시·도 종합검토 의견

0

0

나. 시·군·구 종합검토 의견

0

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(서명 또는 인) ○○도지사·광역시장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 사업 참여농가 현황

사업 참여농가 현황

□ 사업신청자(단체)명:

□ 대표자명:

		1(21)01				<u>ж</u> , 10	시설		예상형	
번호	농가명	주소지	연락처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재배 면적 (m²)	종류	면적(m²)	재 배 품목	생산	수출
계	명	_	_	_	(111)	_		_		. –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16										
17										
18										
19										
20										
21										
22										
23										
24										
25										

주1) 시설종류는 유리·경질판·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,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

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(예시)

※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

수신: ㅇㅇㅇ(보조사업자)

1.	$\lceil 0 0 0 \rceil$	사업	추진을	위한	보조금을	다음과	같이	교부결정	하오니	붙임
	교부조건을	을 준	수하여	보조사	업 수행에	만전을	·기하	여 주시기	바랍니	l다.

□ 보조 /	사업명:
--------	------

- □ 보조 사업자:
- □ 사 업 개 요
 - 사업기간:
 - 사업규모:

사업명	총사업비	국비	지방비	재정융자	수익자부담
세부사업명					
(△△사업)					
(□□사업)					

- 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(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)
 - 보조비율 : OO% (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)
 - 사업내용 :
 - ※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

□ 교 부 목 적 :

□ 예 산 과 목 : 0000회계(00계정)

분야	부문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목・세목
120	123	3000	3031	306	330-01
교통및물류	도시철도	0000	0000	00000	자치단체 경상보조

□ 교부결정내역

(단위 : 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	기 교부액	교부 요청액	금회 교부액	교부잔액	비고
ㅇㅇ사업	A+B					
(△△사업)	A					
(□□사업)	В					

- *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(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)
- 2. ㅇㅇㅇ(보조사업자)는 「ㅇㅇㅇ」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 - 가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. 다만,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.
 - 2.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 - 3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- 3.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(「보조금법」제30조)
 - 다.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라. 중앙관서(또는 시·도지사)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
 - 마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(해당 부처에 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)
 - 바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 - 사.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

붙임: 보조금 교부조건 1부.

[별지 제6-1호 서식] 물품구매 표준계약서

				계약기	번호 제	ই
		물품구매표준계약	서	공고	번호 제	<u>호</u>
	발 주 처					
계	E 1 /1	·상호 또는 법인대	 명칭:	·법인등록번	 ਨੋ:	
약	 계 약 상 대 지		0 0 .	·전화번호:		
자		·주 소:		U4 U.Z.		
	물 품 명	1 7.				
	계약금액	금	 원정(₩)		
	총제조부기금액		 원정(₩)		
 계	계약보증금	<u> </u>	 원정(₩)		
약	지체상금율		-			
내	물가변동계약		<u> </u>			
.'' 용	금액조정방법					
	납품일자					
	납 품 장 소					
	기 타 사 항					
	자치단체의 장(기		약상대자는 붙임의	계약문서에 의	하여 위 물품	 - 에 대한
=	구매계약을 체결	하고 신의에 따라	성실히 계약상의	의 의무를 이행	할 것을 획	낙약하며,
٥	이 계약의 증거로	서 계약서를 작성히	·여 당사자가 기	명날인한 후 각	각 1통씩 효	L관한다.
붙유	2. 물품 3. 물품	구매입찰유의서 1부 구매계약일반조건 : 구매계약특수조건 : 및 내용서 1부	1부			
		내역서 1부				
		내역서 1부 20				
	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			(인)	
	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	부담당공무원 ∹ 농업(법)인		(인)	
	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	약담당공무원 ÷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		(인) (인)	
	5. 산출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: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 ·품 내 역 서		(인)	
	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÷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	단 가		
	5. 산출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: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 ·품 내 역 서	단 가	(인)	<u> </u>
	5. 산출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: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 ·품 내 역 서	단 가	(인)	H
	5. 산출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: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 ·품 내 역 서	단 가	(인)	<u>1</u>
	5. 산출	내역서 1부 20 지자체 계약 또는 계 물	약담당공무원 : 농업(법)인 약 상 대 자 ·품 내 역 서	단 가	(인)	Н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

[※]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74조,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

	고		계약번호 제 호
			공고번호 제 호
	발 주 처		
계 약	계 약 상 대 자		[등록번호 -번호
자	연 대 보 증 인		[등록번호 -번호
	공 사 명		
	계 약 금 액	금 원정(₩)
	총공사부기금액	금 원정(₩)
계	계 약 보 증 금	금 원정(₩)
약	현 장		
' 내	지 체 상 금 율	%	
용	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		
	착 공 연 월 일		•
	준 공 연 월 일		
	기 타 사 항		
	하자	담보책임(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	
-	공 종 공종별 계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
			정
			[정
			정
의 이	서에 의하여 위의 의무를 이행할 것	약담당자)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을 확약하며,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가.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한다.	l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
붙		약일반조건 1부 약특수조건 1부 1부	
		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	
		또는 농업(법)인	(인)
		계약상대자	(인)
		연대보증인	(인)

(통합)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

	선정사업	□ 시설원예현대	화, □ ICT융복합	확산, 🗌 농업에너	지이용효율화 (해	당유형 ☑ 표시)
	유형	□ 청	등업인, □ 농업법	인, 🗆 생산자단체	┃ (해당유형 ☑ 표	포시)
	사업대상자명 (개인·법인·단지)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
	대표자명			생년월일		(남/여)
일반 현황	재배작물			재배규모		
_ 6	(사육축종) 소속			(사육두수) 사업참여		(m², 마리)
	노득 농가 수		호	농가 수		호
	주소				(반드시	상세주소 기재)
	일반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팩스번호	
	사업명	사업	내용	규모·수량 (m², 대, 개소)	소요액 (백만원)	추진시기 (기간)
		합	계			
	당초					
사업						
계획		합	 계			
	H4 74					
	변경					
	변경사유 상세히 작성)					
	위와 간이 시석위	님에 분야 지워사 <u>와</u>	업옥 변경시청 하	·오니 승인하여 주	시기 바란니다	
	THE STREET		de 2020 -	1 1 0 E 11 1		
			20 년 월	일		
						/.I=I == : ::
004	·l장·군수·구청경	당 귀하		신정자	ii: 0 0 0	(서명 또는 인)
* 사임	업대상자는 사업변	l경 필요 시 해당	시장·군수 승인 ·	후 추진, 시·도지시	는 시·군 승인사	항 검토 후 지체
	l 변경결과 농식품					

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

(단위: 천원)

						주			Lο	1 2	.E							T1-	사	앝	1	비	_		- 11						Н
호 겨	실	시군	단체	댚	농					를 링	3		,	계호	ļ			집 (행실 정신	!석 <u>ŀ</u>)		대	(h음i 이월	해 <u> </u>	-	불용	!	착	준	불용
회 겨 연 도	시도명	시군구명	단 체 명	대 표 자	가 명	재 배 작 물	사업구분	세 부 사 업	계 획 (A)	실 적 (B)	대 비 (B/A)	계	(C)	융 자	지 방 비	자 부 담	계	국 (D)	융 자	지 방 비	자 부 담	대 비 (D/C)	국고	융 자	지 방 비	국고	융 자	지 방 비	착공일	전 공이 의	사 유
계											%											%									

주1) 작성요령

- 가. "사업구분": 농산물전문생산단지, 일반원예시설 구분 기재
- 나. "세부사업":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·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기재
- 다. "주 재배작물": 대표 품목명 1개 기재(예시: 토마토, 오이, 백합 등)
- 라. "사업량": 세부사업별 설치,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(사업성격에 따라 개소, 대, m², ha 등)
- 마. "사업량" 및 "사업비"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
- 주2)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사업자 선정기준표(농산물전문생산단지)

ㅁ 티피어.	/cu	\	ㅋ ㅊㄷᅯ. /	١
□ 단지명:	(대표자:)	□ 총득점: () 점

- □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: 1.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(여/부), 2.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(여/부), 3,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여/부), 4,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(여/부)
- 1.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(50%)

구분	'16년	(10%)	'17년	(15%)	'18년	(25%)	합계
T世	배점	득점(A)	배점	득점(B)	배점	득점(C)	업계
■ 90점이상	10		15		25		
■ 80점이상~90점미만	8		12		20		
■ 70점이상~80점미만	6		9		15		A+B+C=
■ 60점이상~70점미만	4		6		10		()점
■ 50점이상~60점미만	2		3		5		
■ 50점미만	0		0		0		

- * 사업대상자 제외: 예비단지,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,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
- 2.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(30%)
 - * '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배점	수출금액		총 출하	·금액	득점	
• 100%	30	■ '17년:	백만원	■ '17년:	백만원		
■ 75%이상~100%미만	24	• '18년:	백만원	• '18년:	백만원	$(A/B)\times 10^{\circ}$	
■ 50%이상~75%미만	18		. – –		. – –	= ()	%
■ 25%이상~50%미만	12	■ '19년:	백만원	■ '19년:	백만원	()전	덕
■ 25%미만	6	■ 합계(A):	백만원	■ 합계(B):	백만원	` ',-	_

3. 최근 3년간 공동선별·공동계산 실적(20%)

* '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배점	공동선별·계산 실적		총 출하실적		득점
■ 90%이상	20					
■ 80%이상~90%미만	16	■ '17년: -	톤	■ '17년:	톤	(A/B)×100
■ 70%이상~80%미만	12	■ '18년:	톤	■ '18년:	톤	= ()%
■ 60%이상~70%미만	8	■ '19년:	톤	■ '19년:	톤	/ \
■ 50%이상~60%미만	4	■ 합계(A):	톤	■ 합계(B):	톤	()점
■ 50%미만	0					

4. 가점(중복 적용 가능)

-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경영체(5점): ()점
-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(5점): ()점
- 농식품인증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(5점): ()점
-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(5점): ()점

5.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

지원지	h격 및 요건 충족 여부		지원제외 대상자 여부		
충족 () / 미충족 ()	대상 () / 미대상 ()

사업자 선정기준표(일반원예시설-경영정보등록 3년초과)

□ 사업자명:	(대표자:)	□ 총득점: () 점
---------	-------	---	--------------

□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: 1.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(여/부), 2.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(여/부), 3.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여/부), 4.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(여/부)

1. 사업계획서 평가(50%)

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(15점)	사업비 확보 가능성 (15점)	사업 기대효과의 적정성 (10점)	지역사회 기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(10점)	득점
매우높음(15점)높음(12점)보통(8점)낮음(4점)매우낮음(0점)	매우높음(15점)높음(12점)보통(8점)낮음(4점)매우낮음(0점)	매우적정(10점)적정(7.5점)보통(5점)미흡(2.5점)매우미흡(0점)	매우높음(10점)높음(7.5점)보통(5점)낮음(2.5점)매우낮음(0점)	() 점

2. 최근 3년간 공동선별·공동계산 실적(30%)

		、 ,		
구분	배점	공동선별·계산 실적	총 출하실적	득점
■ 90%이상	30			
■ 80%이상~90%미만	24	■ '17년: 톤	■ '17년: 톤	(A/B)×100
■ 70%이상~80%미만	18	■ '18년: 톤	■ '18년: 톤	= ()%
■ 60%이상~70%미만	12	■ '19년: 톤	■ '19년: 톤	() 7.1
■ 50%이상~60%미만	6	■ 합계(A): 톤	■ 합계(A): 톤	()점
■ 50%미만	0			

3.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(10%)

* '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배점	수출금액		총 출하금액		득점
1 00%	10	■ '17녀:	밴마워	■ '17년:	백만원	
■ 75%이상~100%미만	7.5	· '18년:	. — —	• '18년:	백만원	(A/B)×100
■ 50%이상~75%미만	5		. — —	_		= ()%
■ 25%이상~50%미만	2.5	■ '19년:	. — —	■ '19년:	백만원	()점
■ 25%미만	0	■ 합계(A):	백만원	■ 합계(A):	백만원	, / -

4. 주 품목에 대한 시·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(10%) * '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

구분	배점	해당 조직		○○시·도		득점
• 100%	10	■ '17년:	토	■ '17년:	톤	
■ 75%이상~100%미만	7.5	• '18년:	_	• '18년:	톤	$(A/B) \times 100$
■ 50%이상~75%미만	5	_	토	_		= ()%
■ 25%이상~50%미만	2.5	■ '19년:	_	■ '19년:	톤	()점
■ 25%미만	0	■ 합계(A):	톤	■ 합계(A):	톤	, , –

5. 가점(중복 적용 가능)

-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경영체(5점): ()점
-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.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(5점): ()점
- 농식품인증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(5점): ()점
-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(5점): ()점

6.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

지원7	다격 및 요건 충족 여부		지원제외 대상자 여부		
충족 () / 미충족 ()	대상 () / 미대상 ()

사업자 선정기준표(일반원예시설-경영정보등록 3년이내)

□ 사업자명:	(대표	포자:)		□ 총득	점: () 점
□ 최우선 지원요건 설치(여/부), 3. 7	충족여부 : 1. 노 [:] 재해 피해 농업인·농			•		
1. 사업계획서 평가((50%)					
생산·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(15점)	사업비 확보 가능성 (15점)	(획의 적정성 (10점)	중장기 계획 실현가능성(10)점)	득점
매우높음(15점)높음(12점)보통(8점)낮음(4점)매우낮음(0점)	매우높음(15점)높음(12점)보통(8점)낮음(4점)매우낮음(0점)	■ 적정(■ 보통(■ 미흡((5점)	매우높음(10²높음(7.5점)보통(5점)낮음(2.5점)매우낮음(0절	(() 점
2. 사업 신청일 기준	· 재배예정 주 품목	에 대한	재배경험(30)%)		
구분	ь	 내점	공동선발	별·계산 실적		득점
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 		50 40 30 20	• '16년 이전 • '17년: • '18년: • '19년:		()점
6개월 미만3. 사업 신정일 기준 구분	_	0 교육이수 ^{배점}	- 시간(20%)			득점
 100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100시 40시간 이상 70시간 20시간 이상 40시간 14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	간 미만 난 미만 난 미만	50 40 30 20 10	• '16년: • '17년: • '18년: • '19년: • 합계:	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	()점
 ○ 농작물재해보험 10% 이상~30% ○ 「원예·특작시설 규격 시설(5점): ○ 농식품인증 비율(○ 밭작물공동경영: 	가부하는 농업인·농업 중 농업용시설보험 6 미만 2점): () 내재해 설계기준 5	가입 점 일 내재 ⁶ 이상~5(ቱ(5점):	비율(50%이 (배형 시설규칙)% 미만 3점, ()점	상 5점, 30% (격의 등록 등에 , 10% 이상~30	관한 구 % 미만	구정」에 따른 2점): () 점
5. 지원자격 및 요건						
	및 요건 충족 여부			지원제외 대상		
충족 () / 미충족 ()	대상 () / 미	대상 ()

사업자 선정기준	표(화훼류)
----------	--------

ㅁ 피어되며.	/ FIL == T . \	_ 초 _ ᅯ. /
□ 사업자명:	(대표자:)	□ 총득점: () 점

□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: 1.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(여/부), 2.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(여/부), 3. 재해 피해 농업인·농업법인(여/부), 4.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(여/부)

1. 사업계획서 평가(40%)

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	사업비 확보 가능성	생산·수출계획의 적정성	득점
(15점)	(15점)	(10점)	
 매우높음(15점) 높음(12점) 보통(8점) 낮음(4점) 매우낮음(0점) 	 매우높음(15점) 높음(12점) 보통(8점) 낮음(4점) 매우낮음(0점) 	 매우적정(10점) 적정(7.5점) 보통(5점) 미흡(2.5점) 매우미흡(0점) 	() 점

2.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(40%)

구분	배점	수출실적		총 출하실적		득점
■ 90%이상	50					
■ 80%이상~90%미만	40	2017년:	톤	2017년:	톤	(A/B)×100
■ 70%이상~80%미만	30	2018년:	톤	2018년:	톤	= ()%
■ 60%이상~70%미만	20	■ 2019년:	톤	2019년:	톤	,) <u>T</u> I
■ 50%이상~60%미만	10	■ 합계(A):	톤	■ 합계(A):	톤	()점
■ 50%미만	0					

3. 해당 품목에 대한 시·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(20%)

구분	배점	해당 조직		○○시·도	득점	
• 100%	20	■ 20 년:	토	■ 20 년:	톤	
■ 50%이상~100%미만	16	■ 20 년:	토	■ 20 년:	톤	(A/B)×100
■ 30%이상~50%미만	12		_			= ()%
■ 20%이상~30%미만	8	■ 20 년:	톤		톤	()점
• 20%미만	4	■ 합계(A):	톤	■ 합계(A):	톤	, , , ,

4. 가점(중복 적용 가능)

-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경영체(5점): ()점
-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규격 시설(5점): ()점
- 농식품인증 비율(50%이상 5점, 30% 이상~50% 미만 3점, 10% 이상~30% 미만 2점): () 점
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(5점): ()점
- 지역 푸드플랜 참여(또는 참여 약정)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(5점): ()점
-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(5점): ()점

5.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

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			지원제외 대상자 여부				
충족 () / 미충족 ()	대상 () / 미대상 ()		

발급번호 제	<u></u> 호								
현타진호 제	<u>.Y.</u>								
()사업	사업실적	(フ]성고)	확인/	서		
주 소									
성 명		생년월일							
사업내용									
건축물 소재지									
건축물 규모(m²)				구 조					
사업계획	합계 (A=B+C+D))		자부담(B)		보조금(C)		융자금(D)		
		1000천원	400천원(4	10%) 300ž		천원(30%) 300천원		300천원(30%)	
	* 총투자계획	l은 공사 도급	계약서 등을 통	해 획	인				
사업실적	공정률 (J=E/A)	합계 (E=F+G+ H+I))	자부담(F)	보조금(G)		융자금(H)	기타(I) (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)	
	40%	400천원	200천원		100천원		천원	100천원	
	*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(단, 기타(I)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)하고,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- 증빙자료: 세금계산서, 영수증, 노무비 명세,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								
대출현황	금번 대출	: 신청액(L)	기 대출액(K)			대출 총계(=L+K)			
네 = 연명		120천원	천원				천원		
사업대상자 결정	년	월 약							
현장 점검자	(직 급)		(성 명)						
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(기성고) 확인을 요청합니다.									
		L'	일 일	!					
	시쳐이	(사업대상자)		(명 또는 닡	l ol)			
상기 내용에			집행률 이행, 츠				사실	l과 다르지 않	
음을 확인함.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	102 70,	,		0 0 2 / 1	, _	2 / / / -0	
ㅁㄹ 즉 납늅.		, 3	0) ^	ı					
		년	[월 일	<u>!</u>					
확인자 (인)									

※ 대출 가능금액 산출(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)

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

- 1.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%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
- 1. 지구급비율이 한편 지급비그 20%이렇어고 한편 지구급 급급이 2국한 이렇면 경구 : ①최초 대출시 F는 B*1/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(예시 : (A× J) (F+G+K)) 2. 1호 이외의 경우 :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(예시 : (A× J) (B+G+K))

천원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-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-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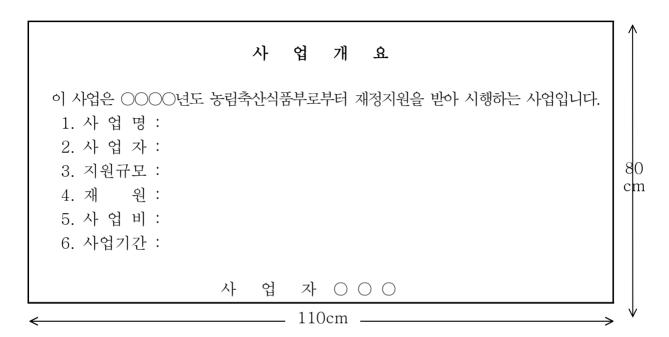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- 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- 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- 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-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시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

1. 표준안

가. 준공전 안내문



나. 준공후 안내문

이 사업(시설)은 ○○○○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(설치한)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1. 사 업 명 :

2. 사 업 자 :

3. 시설규모 :

4. 재 원:

5. 사 업 비 :

6. 사업기간 :

○○○년 월 일

21 cm

다. 스티커형 표지

이 농기계(차량, 철부선 등)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(설치)한 것으로 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2. 대 상

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

< 예시 >

- 건축물: 미곡종합처리장, 농산물저장창고, 유리온실, 집하장, 농산물가공공장, 농산물생산·유통시설, 축산시설, 직거래 판매시설 등
- 시설물: 저수지, 양수장, 배수장, 농어촌도로, 임도 등
- 사업장 : 농지종합정비지구, 재경지정리지구,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,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, 간척사업지구, 관광농원, 축산단지, 농공단지 등
- 기 타 : 대형농기계 등

<제외사업>

- 예 :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, 도난·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

3. 표시방법

- ㅇ 준공전 안내문
 -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(규격 110cm×80cm)
- ㅇ 준공후 안내문
 - 동판, 석판, 나무판,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(규격 30cm×21cm)
 -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
 - ※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 커도 가능함